(붙임 1)

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 선임(또는 해임/사임) 내용

1. 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 선임

성 명 (한 자)	직 위	임원 여부	주민등록 번호 (앞의 6자리)	선임일	임기 (만료일)	업무 범위	겸직 직위 및 업무	주요 경력[1]	자격요건 확인결과
이혜숙 (李惠淑)	사내 이사	등기 이사	650401	26.1.16	28.1.15	준법감시 업무 및 위험관리 업무	위험 관리	'84.02~'23.01 신한은행 '23.12~'26.01 베네투스 자산운용	이상 없음

주 1) 주요 경력란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학력 또는 기관에서의 근무경력과 최근 5년간의 근무경력을 연월 단위로 기재

2. 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 해임(사임)

성 명 (한 자)	주민등록번호 (앞의 6자리)	선임일	해(사)임일	해(사)임사유[1]	비 고[2]

주 1) 해(사)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이사회 결의서, 사직서 사본 등) 첨부
2) 향후 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 선임일정 및 절차 등

(붙임 2)

준법감시인 선임 심사표

성 명 (한 자)	이혜숙 (李惠淑)	직 위	이사

심 사 항 목	심 사 결 과	비 고
1.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, 그 밖에 다음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인 없을 것 1)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2)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	이상없음	
2.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*. 다만, 각 목(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.	법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 신한은행 1984.02~2023.01	
3.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	이상없음	
종 합 의 견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을 갖춤		
2026년 1월 16일 베네투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준법감시인 이 혜 숙 (인) 베네투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서 태 원 (인)		

*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중 해당하는 목을 기재하고,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

【첨부서류】

1. 이사회 결의서
2.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(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)
3.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기관,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, 그밖의 감독·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(감봉요구)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준법감시인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인사기록카드, 감독기관·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4.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근무확인서(경력증명서 등)
5. 이전 근무처가 외국 소재의 금융회사인 경우 금융법규상 준법감시인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준법감시인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. 다만, 준법감시인 선임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준법감시인 선임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되,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)
6.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
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표

성 명 (한 자)		직 위	

심 사 항 목	심 사 결 과	비 고
1. 법 제28조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, 그 밖에 다음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인 없을 것 1)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2)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	이상없음	
2. 법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*. 다만, 법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8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.	법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 신한은행 1984.02~2023.01	
3.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	이상없음	
종 합 의 견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갖춤		
2026년 1월 16일 베네투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준법감시인 이 혜 숙 (인) 베네투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서 태 원 (인)		

*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 중 해당하는 목을 기재하고,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

【첨부서류】

1. 이사회 결의서
2.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(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)
3.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속기관,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, 그밖의 감독·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(감봉요구)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인사기록카드, 감독기관·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4. 법 제2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근무확인서(경력증명서 등)
5. 이전 근무처가 외국 소재의 금융회사인 경우 금융법규상 위험관리책임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. 다만,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되,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)
6.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